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종자산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5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5
3. 조문별 검토의견	6
※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1. 12.
3. 회 부 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아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뿐 아니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도 포함하고 있어 보호품종의 종자가 수산식물종자인 경우에는 보호품종의 출원·심사 및 결정,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등 이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등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도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산종자의 생산·유통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2호 및 제6조제15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42호),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를 「수산물자산업육성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제6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1. ~ 41. (생략)	1. ~ 41. (현행과 같음)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	42. ----- -산림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현행	개정안
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 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 무원	----- ----- ----- ----- ----- -
42의2. ~ 53. (생략)	42의2.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 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 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 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 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 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 된 범죄	15. ----- ----- ----- ----- ----- ----- ----- -범죄, 「내수면어업법」에 규정 된 범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규정된 범죄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6. ~ 50. (생략)	16. ~ 50. (현행과 같음)

2.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체계에서 사법경찰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
- 1956년 이 법 제정 이후 특별사법경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5,0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¹⁾

1) 기관별, 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안 제5조제 42호)

□ 현행법²⁾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식물신품종 보호법」³⁾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률이고,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관한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관한

2)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소관으로 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이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특정 영역의 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지정 변화>

제정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 형무소 또는 그 지소의장이 아닌 전옥보, 간수장, 간수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장이 아닌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3. 영림서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4.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에 근무하며 시험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5. 농림부산림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6. 특별시(特別市有林事業所를 포함한다), 도(道有林事業所, 道砂防管理
-----	--

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Ⅱ)-중앙행정기관 비경제부처-』 (연구총서 23-B-08. 2023.12.), p291

	所, 道林業試驗場을 包含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임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7. 시, 군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8.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며 전매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 9. 보건사회부, 특별시, 도, 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국가공무원과 3급, 4급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4급, 5급국가공무원
현행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53.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한편, 현행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은 수산종자와 관련한 범죄 수사·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⁵⁾, 개정안 제6조제15호는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검토보고서 p10 참조

나.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확대(안 제6조제15호)

- 어업감독 공무원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후⁶⁾, 1981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개정 당시 여러 법⁷⁾에 산재하여 있던 사법경찰관리 지명규정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직무 범위가 정해졌고 다음과 같이 그 범위가 변화하여 왔음.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연혁>]

제·개정 연도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1981년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009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017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2019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 6)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1953.9.9.제정) 제60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한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 경찰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행한다.
- 7)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광산보안법·근로기준법·선원법·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 현행법⁸⁾은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로써 관할하는 직무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로만 정하고 있어,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한 범죄를 어업감독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음.⁹⁾

□ 이에 개정안은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범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수산종자 불법유통 등 수산종자산업 관련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관련 위반행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¹⁰⁾,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는 수

8)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9)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이슈』, 2026. 7. 15.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71516393336b50722e900_12

- 최근 중국산 단검 종자가 불법으로 생산·유통됨에 따라 국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내 수산종자산업을 위축시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10)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

산종자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적시되어 있는¹¹⁾등 어업감독 공무원의 기존 수사·단속 대상에 수산종자와 관련된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범죄를 포함한다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어업감독 공무원의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수사·단속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수사·단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이 범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한정된 분야에 보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 11)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문 의 처
02)6788-5073

※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025. 12. 31. 기준)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1	재정경제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19
2	재정경제부(국세청)	조세 관련 범죄	5,421
3	법무부(교소도 등)	교도소, 구치소 내 발생 범죄	1,228
4	국방부(방첩사령부 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범죄	400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58
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사범 등	2,354
7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
8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문화유산법 위반 사범	10
9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범	1,153
11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 범죄	181
1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위반 범죄	54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68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법 위반 범죄	16
15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7
1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84
17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73
18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4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183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0
21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59
22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 발생 범죄 등	476
23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
24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9
25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범죄	174
26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17
27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43
28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등 안전 규제 위반 범죄	2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등 위반 사범	55
30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4
3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범죄	45
32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31
합 계			15,199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025. 12. 31. 기준)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차량운행제한, 환경 등 관련 범죄	407
2	부산광역시	〃	328
3	인천광역시	〃	341
4	대구광역시	〃	239
5	대전광역시	〃	187
6	광주광역시	〃	177
7	울산광역시	〃	242
8	세종특별자치시	〃	39
9	경기도	〃	670
10	경상남도	〃	378
11	경상북도	〃	577
12	충청남도	〃	572
13	충청북도	〃	537
14	전라남도	〃	465
15	전북특별자치도	〃	300
16	강원특별자치도	〃	565
17	제주특별자치도	〃	40
합 계			6,064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